

[별표11]

이용료 징수

* 등급자 : 1일 이용수가 <공단(85%) + 개인부담금(15%)>

(주간보호 보험수가:2026년 1월 변경)

분 류	금액(원)						비고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장기요양 인지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41,820	38,720	35,740	34,120	32,490	32,490	* 비급여항 목 식재료비 간식재료 비 3,500원 추가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6,060	51,930	47,940	46,300	44,650	44,65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9,730	64,590	59,640	58,010	56,360	56,360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76,820	71,160	65,750	64,090	62,460	56,360	
12시간 이상	82,370	76,310	70,500	68,860	67,240	56,360	

* 비급여항목(식재료 및 간식재료 별도)

* 등급외 자 : 이용료 200,000원, 비급여항목(식재료비및간식재료비)50,000원
총 = 250,000원

(방문요양/목욕 보험수가:2026년 1월 변경)

분 류	금액(원)							
	이용시간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비고
방 문 요 양	30분이상	17,450						
	60분이상	25,320						
	90분이상	34,120						
	120분이상	43,430						
	150분이상	50,460						
	180분이상	57,020						
	210분이상	63,530						
	240분이상	70,080						
방 문 목 욕	60분	50,100	※ 방문요양 ※방문목욕					

[별표 1]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 01. 01.)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 분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장기요양 인지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41,820	38,720	35,740	34,120	32,490	32,49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6,060	51,930	47,940	46,300	44,650	44,650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69,730	64,590	59,640	58,010	56,360	56,360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76,820	71,160	65,750	64,090	62,460	56,360
12시간 이상	82,370	76,310	70,500	68,860	67,240	56,36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8.95%인상	11.89%인상	2.86%인상	2.85%인상	2.71%인상	2.88%인상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정리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6%

[별표 2]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아·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아·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아·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